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0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김승원 · 전용기 · 김한규
김용민 · 김남희 · 강준현
손 술 · 박은정 · 박지원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

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장소·상대방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나. 압수·수색·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증거·양형자료 등의 발견·취득·제출·보관·이관·반환·폐기 등 증거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호 중 “관리체계를”을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사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능

나.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보관 기능

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등재 기능

라. 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결과의 등재·관리 기능

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삭제 일시와 처리자 및 수정·삭제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기능

사. 동일 사건의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공소제기 등 각 단계의 기록을 사건별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아. 증거물 등의 발견·취득부터 보관·이관·반환·폐기에 이르기
까지 처리이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수사공무원의 기록·등재 의무) ① 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그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 ③ 수사공무원 및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사항을 정정·보완·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처리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 전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속한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고,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른 사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자료 등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른 사항은 각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 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
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
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
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
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장소·상대
방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나. 압수·수색·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다. 증거·양형자료 등의 발
견·취득·제출·보관·
이관·반환·폐기 등 증거
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
위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
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
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마. 「형사소송법」 제197조
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
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
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관한 사항

4. -----

-----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

가. 수사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능

나.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보관 기능

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등재 기능

라. 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

<u><신 설></u>	<u>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u> <u>그 이행 결과의 등재·관</u> <u>리 기능</u>
<u><신 설></u>	<u>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u> <u>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u> <u>삭제 일시와 처리자 및 수</u> <u>정·삭제 전후의 내용을</u> <u>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u> <u>기능</u>
<u><신 설></u>	<u>사. 동일 사건의 수사·송치</u> <u>· 보완수사·재수사·공</u> <u>소제기 등 각 단계의 기록</u> <u>을 사건별로 연계하여 관</u> <u>리할 수 있는 기능</u>
<u><신 설></u>	<u>아. 증거물 등의 발견·취득</u> <u>부터 보관·이관·반환·</u> <u>폐기에 이르기까지 처리이</u> <u>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u> <u>있는 기능</u>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조의2(수사공무원의 기록·등</u> <u>재 의무) ① 수사공무원은 수사</u> <u>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u> <u>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형</u> <u>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u> <u>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u>

제15조(벌칙) ① ~ ③ (생략)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그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사공무원 및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사항을 정정·보완·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처리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 전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등재한 수사 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⑤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